

택시미터기(사용·수리)검정 및 적법 사용 안내

※ 정기검사, 연장검사 시 미터검정 불합격 판정 후 당일 재 검정 불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

- 아 래 -

□ 사용검정

○ 검정기간 :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

○ 위 반 시 : 과태료 30 ~ 50만원

※ 자동차검사 유효기간(자동차등록증확인) 만료일 전·후 31일이 내 검정 받아야 함.

※ 검정기간 경과 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됨.

※ 택시미터 사용검정 기간 내 사용검정을 받지 않고 택시미터를 사용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.

□ 수리검정

○ 검정일시 : 사용검정 불합격 시 즉시

○ 위 반 시 : 과태료 100만원

※ 거래처인 수리검정 업체(미터기집)가 휴업인 경우 타 수리검정 업체(미터기집)에서검정을 받아야 함.

※ 택시미터 사용검정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수리검정을 받지 않고 택시미터를 사용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.

□ 수리검정기관 현황

구 별	업 체 명	소 재 지	전화번호
미추홀구	인천 카 상사	인주대로358(주안동)	☎ 863-1112
	제일택시미터공사	인주대로43(송의동)	☎ 883-5764
	전국 택시복지매장 남동점	한나루로 341번길 72(학익동)	☎ 868-1441
부평구	부평택시미터	청천동 107-28	☎ 501-8810
	(주) 태보에너지	경인로 1182(일신동)	☎ 502-1172
서구	믿음 카 상사	백범로 718번길 34-1(가좌동)	☎ 421-3268
	(주) 세븐콜택시	백범로 845-1(가좌동)	☎ 574-0963

□ 과태료의 부과 기준 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금액(만원)
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	법 제84조 제2항 제17호	100
1. 제작·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		
2.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.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)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		

□ 불법조작 사용 금지

▶ 미터의 봉인을 훼손하여 미터를 조작한 경우/합증 적용기준을 임의 변경한 경우

[적용기준]

미터 종류	심야 합증	시계외 합증
디지털 미터	자동	수동

▶ 위반시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 만원 이하의 벌금
(운전자와 미터조작자 모두 처벌)

※ 자동 : 버튼조작 없이 시간(지점)에 따라 자동 변경

※ 수동 : 시간(지점)에 따라 버튼 조작